

- ☐ '04. 5.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11쪽

환경정책실	정희석 과 장	전화	2110-6962
환경보건정책과	이지윤 사무관	(메일)	jeeyoon@me.go.kr

화학물질 관리기능 보강을 통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추진

- ◇ 환경성질환 규명 및 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·추진
- ◇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화학사고 예방·대바·대응체계 등 보강
- ◇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강화

☐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 직제개편에 의해 기존 '화학물질과'를 '환경보건정책과', '화학물질안전과', '유해물질과' 3개과로 확대하면서 동 기능도 「폐기물자원국」에서 「환경정책실」 소관으로 이관하여 오염의 사전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.

- 이는 그동안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실질적 위해성(危害性) 관리 차원의 화학물질관리정책 추진의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.

☐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향에 따라 환경보건 정책과에서는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('05~'14)수립 등 화학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체건강 및 생태계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본대책을 수립·추진한다.

- 또한 그동안 독성 위주로 관리하여 온 화학물질관리도 독성은 물론 노출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해성관리로 전환하고,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위해성이 큰 물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「취급제한물질」 제도 등의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.

- 화학물질안전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체계를 강화하고,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·유통량 조사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.

이와 함께 화학물질 분류·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(GHS), 사고 대비물질 지정·관리제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진 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유해물질과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, 내분비계 장애물질(일명 환경호르몬) 등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인체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제적인 관리대상이 되는 특정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.

이와 함께 브롬화난연제(BFR), 비농업용살생물제(Biocides) 등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위해성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의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.

〈참고〉

- 화학물질 분류·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(GHS: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): 국가간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를 범세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 증진, 무역장벽 제거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
- 브롬화난연제(BFR: Brominated Flame Retardants): 브롬성분이 포함된 난연제로서 플라스틱 등 각종 제품의 불연제로 첨가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에서 사용규제 중
- 비농업용살생물제(Biocides): 산업용 방부제, 가정용 살충제 등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 중 농업용 농약을 제외한 물질의 총칭

〈참고자료〉

- 붙임 : 1.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향
2. 환경성질환예방 10개년 계획 수립
 3. 화학물질 용도규제를 위한 「취급제한물질」 제도 도입
 4.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
 5.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
 6. 「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(가칭)」 제정 및 스톡홀름 협약 가입
 7. 브롬화난연제(BFRs), Biocides(비농업용 살생물제) 등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

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향



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['05~14] 수립

〈 현 황 〉

- 아토피성 피부염, 천식, 암 등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직·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질병의 발생사례 증가
 - WHO는 천식, 암, 당뇨병, 선천성 기형 등 만성질환이 지구상 질병의 43%를 차지하며(2020년에는 60%), 이들 질병이 환경오염에 연관 추정

〈 주요 추진과제 〉

- 환경(관련)성질환의 범위설정 및 실태파악
 - 우리나라의 관련질환 발생현황 조사 및 국민의식 조사 실시
 - 현행 환경(관련)성질환 예방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
 -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, 대기·수질 등 매체별 관리부서 기능 포함
 - 과학적인 환경(관련)성질환 예방체계 구축사업 추진
 - “오염물질이동경로와 노출예측” 프로그램 및 인체영향 평가기법 개발
 -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 발생 상관성 분석 모델 개발
 - 유해화학물질 노출 및 등록제도, 건강영향평가 등
 - (가칭)환경보건정보연구소 설립을 장기과제로 검토
- KEI와 우리부 공동주관으로 전문가,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 「환경성 질환전문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

〈붙임 3〉

화학물질 용도규제를 위한 「취급제한물질」 제도 도입

〈 현 황 〉

-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의한 중독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나, 우리나라는 유독물 안전관리 위주의 초보적 관리체계 유지
 - “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”은 세정제, 접착제, 방향제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유해물질 함유제품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
 - 우리부의 “취급제한유독물”은 유독물 중에서만 지정되어, 해당물질이 4개(TBT 등)에 불과
- EU 등 선진국은 화학물질의 독성 및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조, 사용 등을 제한

〈 주요 추진과제 〉

□ 「취급제한물질」 제도 도입

- 그동안 독성 위주로 “유독물”에 국한하여 취급을 제한했던 제도를 노출량 등을 고려한 실질적 위해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“취급제한물질” 제도로 전환
 -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규명된 물질, 국제기구 등의 위해성 평가 자료 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대상으로 용도관리 강화
- 우선, 우리나라에서 노출우려가 큰 물질 중 EU, 일본,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특정한 용도의 제조,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물질에 대하여 용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

※ 금년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 근거 마련

〈붙임 4〉

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

〈 현 황 〉

- 독성가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, 고압가스 신고제 및 수입업등록제가 폐지되어 유통현황 파악도 곤란
 - 독성가스중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특수고압가스는 독성 및 폭발 위험성이 강하나, 일반 독성가스에 비해 관리제도 미흡
- 중·소규모의 화학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동조치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나 단순한 복토 등 대응적 사후관리에 국한

〈 주요 추진과제 〉

□ 사고대비물질 지정제도 도입

-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「사고대비물질」 지정근거를 마련하고, 테러 등 화학무기로 사용가능한 물질, 국내 사고다발 물질 등 화학사고 우려가 큰 물질세부적인 관리대책 규정
- 사고대비물질을 일정규모 이상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「주민대응계획」을 수립토록 제도화

□ 고압가스, 특수독성가스에 대한 사고대응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

- 고압가스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제조·수입시 사전 신고, 취급시설 등록 등 사전·사후관리를 유도
- 실란, 알진 등 반도체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수독성가스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·관리

□ 화학사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

- 화학사고 후 환경 중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인체·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자체방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

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

〈 현 황 〉

- 산업계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유도 등을 위하여 '99년부터 “화학물질 배출량조사” 시행
 - '99년도 2개 업종, 80개 물질에 대하여 조사한 이래 연차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

〈 주요 추진과제 〉

□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물질 및 사업장 확대 추진

- 조사대상 업종 및 업소규모를 확대하고, 조사대상 물질도 유통량, 독성을 감안하여 350여개 물질로 확대 추진

※ 현재는 28개 업종, 50인 이상 사업장, 240개 물질 조사

□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 추진

- 산업계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저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의 사업장별 공개를 추진하되,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시기, 공개대상 정보 등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
 - 산업계, 민간단체, 정부 등이 공동 참여하여 사업장별 저감목표치 설정 및 배출저감계획 수립·이행 방안 협의

□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산업계 지원프로그램 추진

-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종별로 마련
-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의 장기 발전방향 수립

〈붙임 6〉

**「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(가칭)」
제정 및 스톡홀름 협약 가입**

〈 추진배경 〉
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의 국제적 근절을 위한 스톡홀름협약이 발효('04.5.17)됨에 따라 협약 가입 및 국내법 제정 필요
 - 제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회의('05초) 이전 가입 필요
- 국가이행계획(NIP)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
- POPs 총량관리를 위한 대기, 수계, 토양 등 다매체 통합관리 필요
- 부산물 POPs의 배출시설에 대해 BAT(최적가용기술), BEP(최적환경관리기준)을 적용하여야 하나, 기존 대기·수질환경보전법 체계로는 BAT, BEP 개념 수용이 곤란

〈 법안의 주요골자 〉

-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- POPs물질 지정기준 및 동 물질의 환경기준(관리목표) 설정
- 배출량조사, 환경잔류실태조사 등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
- 다이옥신 등의 배출시설을 지정하고 배출관리기준을 설정

〈붙임 7〉

**브롬화난연제(BFRs), Biocides(비농업용 살생물제) 등
특정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**

〈 현 황 〉

- PBBs, PBDEs, TBBPA 등 브롬화난연제 중 PBBs, PBDEs 등은 발암성과 간독성이 확인되어 EU 등 선진국에서 사용 규제
 - 우리나라는 '99년 PBBs를 금지하였으나, 유독물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PBDEs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
 - 2002 유통량조사 결과 국내 브롬화난연제 사용량은 45,340톤이며 이중 EU에서 규제하는 penta-BDE, octa-BDE의 사용량은 2톤 수준
- Biocide는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, 별도의 법령이 없이 부처별 기능에 따라 일부 제품 관리
 - 우리부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일부 성분(TBT, 오산화비소)에 대해 취급제한유독물로 관리

〈 주요 추진과제 〉

□ 브롬화난연제 관리대책

- 브롬화난연제(BFRs) 국내 사용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
 - 각 업체별 사용량, 주요 수입국, 사용 유형, 향후 사용계획(다른 난연제로 대체여부) 등 파악(관련 산업협회 협조)
 - EU의 사용금지 정책과 미국 등의 자발적협약을 통한 감축 방안 등을 산업계와 협의하여 결정

□ Biocides 관리대책

- Biocide 제조·유통량, 사용분야 실태조사
 - OECD 분류기준에 따른 Biocide의 종류별 유통 및 사용 실태 조사
 - ※ OECD에서는 용도별로 소독·살균제, 목재방부제, 건축물처리제 등 7개로 대별하고 세부적으로 29개로 분류
- 국내에서 다량 사용되는 Biocide에 대한 관리현황 분석
 - 관련법령, 주관부처(기관) 및 규제내용 등
- Biocide별 유통 및 사용실태, 규제현황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관리의 필요성 검토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